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3일

○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**원안가결**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권석규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(생업 지원)에 의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, 위탁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

○ 동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우선 고려 조항을 신설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북한이탈주민 신청자격 우선고려 신설(안 제1조, 제4조, 별지서식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○ 본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(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함)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시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우선 설치 허가 및 위탁을 규정한 것임.

○ 현행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르면,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해, 통일부장관은 ‘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’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26조3(생업지원)에 의거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 및 위탁과 관련해 대통령령(시행령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따라서,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,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 및 위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것으로,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
- 제1조(목적)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를 명시하였고,

- 제4조에서는 도민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, 조문명을 '신청자격 및 구비서류' 에서 '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' 으로 변경하고, 제2항에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- 또한, 별표(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) 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설치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,

- 별지 제1호서식(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) 의 첨부서류 목록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를 추가한 것으로,
 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조례안 '별표'에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편의사업,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우선순위와 관련해,
상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을 뿐,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, 조례안 '별표'에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<table>
<tr><th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</th><th>조례안 [별표]</th></tr>
<tr><td>~ 다음 각 호의 <u>어느 하나에 해당</u>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1. 장애인
2.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
3.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
4.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</td><td>
<table>
<tr><th>순위</th><th>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장애인, 부자(父子)가정
또는 모자(母子)가정</td></tr>
<tr><td>2</td><td>6개월 이상 치료를
요하는 질환자</td></tr>
<tr><td>3</td><td>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
생활이 곤란한 사람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 참고자료 >

①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[충북]

(2014. 12. 31 현재)

구 분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
누 계(명)	198	281	394	466	528	670	773	841	948
증가인원		83	113	72	62	142	103	68	107
증가율(%)		41.9%	40.2%	18.3%	13.3%	26.9%	15.3%	10.0%	12.7%

※ 전국(25,436명) 대비 3.7%

② 시·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

(2014. 12. 31. 현재)

시군	비율(%)	계	남	여
계	100	948	182	766
청주시	44.8	425	85	340
충주시	15.8	150	27	123
제천시	8.0	76	12	64
보은군	0.3	3	1	2
옥천군	1.7	16	2	14
영동군	0.8	8	2	6
증평군	3.1	29	9	20
진천군	8.0	76	12	64
괴산군	1.4	13	4	9
음성군	14.9	141	24	117
단양군	1.2	11	4	7

※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947명(거주자948명-비보호4, 보호종료 2, 보호중지1), 통일부 자료

③ 충북도 공공시설 내 매점·자동판매기 우선위탁 현황

구분	매점 및 자판기 현황		관리주체	우선위탁 여부
	매점	자판기		
충북도 본청	0	16	구내식당 운영위원회	부
충북도립대학	0	11	후생복지위원회(대학 직영)	부
자치연수원	1	8	매 점 : 직원 상조회 자판기 : 직원 상조회	부
여성발전센터	0	3	직원 상조회	부
청남대관리사업소	1	2	매 점 : 문의면 번영회 자판기 : 민간(장애인)	부 우선허가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장애인복지법」제42조,「노인복지법」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5조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 및「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)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으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
2.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
4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6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

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제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2.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
4.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(제5조 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노인 및 한부모가족	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
1	장애등급이 1~2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장애인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
2	장애등급이 3~4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
3	장애등급이 5~6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		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
비고

1. 위 표에서 “미과세 대상자”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.
2.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,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,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,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(제4조 관련)

<table>
<tr><td>신청자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장애등급
(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)</td><td></td><td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청내용</td><td>신청장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신청대상</td><td colspan="3">매점 자동판매기 기타</td></tr>
<tr><td>신청내용</td><td colspan="3">매 점 개소(㎡)
자동판매기 개소(커피 대, 음료 대)
기 타 개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「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※ 첨부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1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2.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
4.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*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은 공부 확인으로 갈음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장애인복지법」제42조,「노인복지법」제25조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5조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신청자격 및 구비서류)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.「노인복지법」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 부모 가족 4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	제4조(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)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으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.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	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	6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
②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제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	1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	2.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	3.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
	4.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관계법령 발췌

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·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2. "보호대상자"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
3. "정착지원시설"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"보호금품"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.

제5조(보호기준 등)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, 세대 구성, 학력, 경력, 자활 능력,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.

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,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(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"재외공관장등"이라 한다)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호 결정 등)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

제26조의3(생업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보호 결정 등)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. 다만,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
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3조(임시신분증명서 발급)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26조(등록대장)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·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, 건강진단,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고·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,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.

제47조의6(생업지원)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
2.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
3.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
4.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